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3년 4월 19일(수) · 주간 제16호 · 통권 제1619호 ·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4/ 19 통권 161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송상은 근면의 상징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 받는다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법인세·종소세 신고시 기본 재무제표에 원가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당총액화 가산액(grossup)은 공제하지 아니함 (p.16)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중소기업 설비 취득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비교〉

개념, 구분	금융리스	운용리스
정의, 구분	리스자산의 소유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	리스자산의 단순대여 (소유위험 보상 미이전)
국제회계기준 (K-IFRS)	모든 리스거래를 금융리스로 회계	해당안됨(2019년부터)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3.5)	금융리스적격 (자산소유, 위험, 보상이전)	운용리스적격 (금융리스이외 모든 리스)
거래실질로 판단 (제13.6)	① 리스종료시 소유권 이전 ② 이용자의 염가매수 선택권 ③ 리스기간이 내용연수 상당부분 ④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 ⑤ 이용자만 사용하는 특수용도	금융리스 조건 이외는 운용리스 (소유권 비이전, 염가권리 없고 일부 기간, 가격차이 등, 범용 용도)
리스대금 지급 회계처리 (기본적 내용만)	① 취득 (차) 리스자산 ○○ (대) 리스부채 ○○ ② 지급 (차) 리스부채 ○○ (대) 현금예금 ○○ 지급이자 ③ 결산 (차) 감가상각비 ○○ (대) 리스자산 ○○	(리스료 매월 지급시) (차) 리스료 ○○ (대) 현금예금 ○○ (임차료) (균등배분금액을 당기비용인식)
통합투자세액 공제 (조특법 제24조)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의2) : 어느 하나 해당되면 금융리스임 ①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 무상, 규정이전 ② 리스자산을 취득가 10% 이하로 구매권 ③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 이상 ④ 리스현가가 장부가액의 90% 이상 ⑤ 리스자산용도 특정	조특법 제24조의 투자세액공제에 자산투자취득만 적용 (금융리스 제외한 운용리스는 세액공제 안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19호 / 주간 16호 2023. 04. 19.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중소기업 설비 취득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비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법인세·종소세 신고시 기본 재무제표에 원가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2
C E O 에 세 이	송상은 근면의 상징	7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법인카드사용분 회계처리 누락시 - 상품권 결제관련 문의 - 출장비 관련 문의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9 10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11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연금소득 수령 시 과세방법 및 세율 -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13 14
직 장 인 S u r v i v a l	직장인 영어회화 공부법 두번째	15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서면법규소득-8157, 2022.10.07)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322, 2022.08.22)	16 17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재산세 확 달라진다"...지방세연구원, 과세혁신 방안 연구 착수	18
마케팅 Tax consulting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당총액화가산액(grossup)은 공제하지 아니함	16
세 무 정 보	-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19 25 33
회 계 정 보	-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41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8

법인세 · 종소세 신고시 기본 재무제표에 원가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세무신고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인 바, 제1항은 법인세 신고서에 기본 재무제표로 ① 표준재무상태표 ② 표준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부속명세서(제3의3)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집계하는 원가명세서를 뜻한다. 원가명세서는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및 기타 원가명세서가 별지형식으로 공표되어 있다. 다음 표로 설명하며 규정을 첨부한다.

1. 손익계산서 작성방법 예시

원가명세서 필요한 경우의 손익계산서 예시(매출원가, 구분표시)	원가명세서 필요없는 경우의 손익계산서 예시(매출원가가 없음)
I. 매출액(부문별 수입금액) 1. 상품매출 2. 제품매출 II. 매출원가(부문별 기재가능) 1. 상품매출원가 2. 제품제조원가 3. 공사, 운송, 임대, 분양원가 등	I. 매출액(주로 서비스, 용역업 등) 1. 주요사업 매출수입 2. 기타 수수료 매출 등 II. 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 퇴직급여 3. 보험료 4. 복리후생비 5. 여비교통비 6. 임차료 .....

III. 매출총손익(이익) IV. 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 V. 영업이익(손익)	III. 영업이익(손익)
해당 업종 예시 : 제조, 건설, 도·소매, 운송, 임대, 분양(시행사), 원가별도의 기타사업	전문직 서비스업, 노무비용 없는 경우 원재료 등의 기초, 기말 이월금액 적은 경우(음식, 숙박,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모두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일부 전재

▲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3. 별지 3의3 서식(3)의 부속명세서(6가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속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1. 제조원가명세서			2. 공사원가명세서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재료비	1		Ⅰ.재료비	1	
1.기초재료재고액	2		1.기초재료재고액	2	
2.당기재료매입액	3		2.당기재료재고액	3	
3.기말재료재고액	4		3.기말재료재고액	4	
Ⅱ.노무비	5		Ⅱ.노무비	5	
1.급여	6		1.급여	6	
가.임원급여	7		가.임원급여	7	
나.직원급여	8		나.직원급여	8	
다.임원상여금	9		다.임원상여금	9	
라.직원상여금	10		라.직원상여금	10	
2.일용급여	11		2.일용급여	11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2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2	
가.임원퇴직급여	13		가.임원퇴직급여	13	
나.직원퇴직급여	14		나.직원퇴직급여	14	
Ⅲ.경비	15		Ⅲ.외주비	15	
1.전력비	16		Ⅳ.경비	16	
2.가스・수도・유류비	17		1.전력비	17	
3.운임	18		2.가스・수도・유류비	18	
4.감가상각비	19		3.운임	19	
5.수선비	20		4.감가상각비	20	
6.소모품비	21		5.수선비	21	
7.세금과공과	22		6.소모품비	22	
8.임차료	23		7.세금과공과	23	
9.보험료	24		8.중장비유지비	24	
10.복리후생비	25		9.중기임차료	25	
11.여비교통비	26		10.보험료	26	
12.통신비	27		11.복리후생비	27	
13.차량유지비	28		12.여비교통비	28	
14.외주가공비	29		13.통신비	29	
15.특허권사용료	30		14.차량유지비	30	
16.경상개발비	31		15.현장관리비	31	
17.연구비	32		16.하자보수비	32	
18.포장비	33		17.경상개발비	33	
19.접대비	34		18.연구비	34	
20.지급수수료	35		*19.포장비*	35	
21.교육훈련비	36		20.접대비	36	
22.인쇄비	37		21.보상비	37	
23.보관료	38		22.지급수수료	38	
24.기타	39		*23.설계용역비*	39	
Ⅳ.당기총제조비용	44		*24.교육훈련비*	40	
Ⅴ.기초재공품원가	45		*25.보관료*	41	
Ⅵ.합계	46		26.광고선전비	42	
Ⅶ.기말재공품원가	47		*27.기타*	43	
Ⅷ.타계정대체액	48		Ⅴ.당기총공사비용	47	
Ⅸ.당기제품제조원가	49		Ⅵ.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8	
			Ⅶ.기초미성공사	49	
			Ⅷ.합계	50	
			Ⅸ.기말미성공사	51	
			Ⅹ.타계정대체액	52	
			Ⅺ.당기공사원가	53	

(3쪽 중 제2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속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3. 임대원가명세서			4. 분양원가명세서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1.급여	1		Ⅰ.재료비	1	
가.임원급여	2		(1)토지원가	2	
나.직원급여	3		(2)재료비	3	
다.임원상여금	4		1.기초재료재고액	4	
라.직원상여금	5		2.당기재료매입액	5	
2.일용급여	6		3.기말재료재고액	6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7		Ⅱ.노무비	7	
가.임원퇴직급여	8		1.급여	8	
나.직원퇴직급여	9		가.임원급여	9	
4.전력비	10		나.직원급여	10	
5.가스・수도・유류비	11		다.임원상여금	11	
6.차량유지비	12		라.직원상여금	12	
7.감가상각비	13		2.일용급여	13	
8.수선유지비	14		3.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14	
9.소모품비	15		가.임원퇴직급여	15	
10.세금과공과	16		나.직원퇴직급여	16	
11.지급임차료	17		Ⅲ.외주비	17	
12.보험료	18		Ⅳ.경비	18	
13.복리후생비	19		1.전력비	19	
14.여비교통비	20		2.가스・수도・유류비	20	
15.통신비	21		3.운임	21	
16.용역비	22		4.감가상각비	22	
17.경상개발비	23		5.수선비	23	
18.연구비	24		6.소모품비	24	
19.접대비	25		7.세금과공과	25	
20.지급수수료	26		8.중장비유지비	26	
21.설계용역비	27		9.중기임차료	27	
22.교육훈련비	28		10.보험료	28	
23.인쇄비	29		11.복리후생비	29	
24.보관료	30		12.여비교통비	30	
25.기타	31		13.통신비	31	
임대원가 계	36		14.차량유지비	32	
			15.현장관리비	33	
			16.하자보수비	34	
			17.경상개발비	35	
			18.연구비	36	
			19.포장비	37	
			20.접대비	38	
			21.보상비	39	
			22.지급수수료	40	
			23.설계용역비	41	
			24.교육훈련비	42	
			25.인쇄비	43	
			26.보관료	44	
			27.기타	45	
			Ⅴ.당기총공사비용	47	
			Ⅵ.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8	
			Ⅶ.기초미완성주택등	49	
			Ⅷ.합계	50	
			Ⅸ.기말미완성주택등	51	
			Ⅹ.타계정대체액	52	
			Ⅺ.당기완성주택등공사비	53	

(3쪽 중 제3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속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5. 운송원가명세서			6. 기타원가명세서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재료비	1		Ⅰ.재료비	1	
1.유류비	2		1.기초재료재고액	2	
2.부품비	3		2.당기재료매입액	3	
3.타이어비	4		3.기말재료재고액	4	
4.기타	5		Ⅱ.노무비	5	
Ⅱ.노무비	10		1.급여	6	
1.급여	11		가.임원급여	7	
가.임원급여	12		나.직원급여	8	
나.직원급여	13		다.임원상여금	9	
다.임원상여금	14		라.직원상여금	10	
라.직원상여금	15		2.일용급여	11	
2.일용급여	16		3.퇴직급여	12	
3.퇴직급여	17		가.임원퇴직급여	13	
가.임원퇴직급여	18		나.직원퇴직급여	14	
나.직원퇴직급여	19		Ⅲ.경비	15	
Ⅲ.경비	20		1.전력비	16	
1.전력	21		2.가스・수도・유류비	17	
2.가스・수도비	22		3.운임	18	
3.통행료	23		4.감가상각비	19	
4.청소비	24		5.수선비	20	
5.감가상각비	25		6.소모품비	21	
6.수선비	26		7.세금과공과	22	
7.소모품비	27		8.임차료	23	
8.세금과공과	28		9.보험료	24	
9.임차료	29		10.복리후생비	25	
가.차량	30		11.여비교통비	26	
나.장비	31		12.통신비	27	
다.기타	32		13.차량유지비	28	
10.보험료	33		14.외주가공비	29	
11.복리후생비	34		15.경상개발비	30	
12.여비교통비	35		16.연구비	31	
13.통신비	36		17.포장비	32	
14.차량유지비	37		18.접대비	33	
15.접대비	38		19.지급수수료	34	
16.지급수수료	39		*20.교육훈련비*	35	
17.하역작업료	40		*21.인쇄비*	36	
18.교육훈련비	41		*22.보관료*	37	
19.인쇄비	42		23.기타	38	
20.보관료	43		Ⅳ.당기총비용	43	
21.기타	44		Ⅴ.기초재공품원가	44	
Ⅳ.타계정대체액	49		Ⅵ.합계	45	
Ⅴ.당기총운송원가	50		Ⅶ.기말재공품원가	46	
			Ⅷ.타계정대체액	47	
			Ⅸ.당기총원가	48	

송상은 근면의 상징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부자가 되는 비결, 부자가 되는 길, 부도(富道)는 무엇인가?

부도 1단은 근(勤)이다. 부지런함이다. 노력이다.

민담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한 부자집의 노마님이 곳간의 열쇠를 맡길 며느리를 뽑기 위해 문제를 걸고 공모했다. 응모한 처녀는 동구 밖 초가삼간에서 하녀 한 명과 쌀 한 말만 가지고 석달 열흘 백일을 살도록 했다.

어떤 처녀는 쌀 한 말을 조금씩 백 개의 봉지로 나누어 미움으로 연명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굶주림에 하녀가 도망쳤다. 뒤이어 처녀도 달아나 버렸다. 또 어느 처녀는 한정된 양식을 듬썩듬썩 허비했다. 그 후 단식으로 버티다가 물러갔다. 한 처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초가삼간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집에서는 하루도 못산다며 하녀를 독려하여 함께 마당에 훌쩍 자란 잡초를 뽑고 마루와 방을 쓸고 걸레질을 했다. 드디어 초가삼간은 사람이 살 만하게 깨끗한 집이 되었다. 집 안팎을 대청소하면서 처녀는 하녀에게 앞으로 일을 부지런히 하려면 밥을 많이 먹고 기운을 내야 한다면서 함께 배불리 음식을 먹었다.

이제 또 며칠이나 버틸까하며 노마님은 그녀들을 관찰했다. 처녀는 며칠이 지난 후 하녀에게 자기가 바느질 솜씨가 있으니 주변 마을에서 일감을 얻어 오라했다. 백일이 지났다.

쌀독에는 식량이 가득했다. 마루와 방은 먼지하나 없이 윤이 났다. 마당에는 장날에 사온 병아리들이 커서 살찐 닭이 되어 뛰놀았다. 이 처녀가 노마님의 며느리가 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옛날 송도에서는 장터의 걸인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쩌다가 외지에서 나타난 자가 구걸을 하려들면 송방차인들이 잡아다가 혼을 냈다. 그리고 장사꺼리로 굴비두름이나 푸성귀라도 내주었다. 그것을 그가 팔아오면 이문을 나누도록 했다.

또한 송상들은 자식에게 무조건 대물림을 하지 않았다. 말단 차인배로로부터 여러 과정을 거

치며 수완을 보여서 임방(任房), 말하자면 이사회의 좌장으로 올라온 상단의 책임자인 노련한 행수(行首)에게 경영을 맡겼다.

둘째, 부도 2단. 그것은 검(儉)이다. 절약이다.

중국 청나라 오경재가 지은 풍자소설 '유림외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감생'벼슬을 한 엄대육이 늙고 병들었다. 드디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는 부유하면서도 인심이 넉넉했다. 평소 일가나 이웃을 돕거나 보살피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임종 소식에 원근 각처에서 친척들은 물론 이웃들도 모두 달려왔다. 밤이라 등불을 켜고 걱정스레 지켜보는데 엄대육이 갑자기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다.

괴로운 기색으로 뭔가 말하려는 듯 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숨쉬기조차 곤란했다. 옆에 있던 가족들은 도무지 손가락들을 왜 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둘째 아들을 부르시나? 둘째 아들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럼 뭐지?…. 환자도 괴로워하고 가족들도 답답했다.

이 때 곁에 있던 첩이 갑자기 두 등불 가운데 하나를 껐다.

"바느질도 안 하면서 등불을 둘이나 켜고 있는 것이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대육은 살짝 웃더니 편안한 모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7일(금)	4월 10일(월)	4월 11일(화)	4월 12일(수)	4월 13일(목)
미 달 러	(USD)	1318.70	1318.90	1320.00	1319.50	1324.20
일 본 엔	(JPY)	999.77	999.36	988.28	987.32	995.34
영 국 파 운 드	(GBP)	1639.80	1638.73	1635.08	1640.01	1653.79
캐 나 다 달 러	(CAD)	977.43	976.53	977.45	980.09	985.19
홍 콩 달 러	(HKD)	167.99	168.02	168.16	168.09	168.71
중 국 원	(CNH)	191.50	191.61	191.72	191.43	192.11
유 로 화	(EUR)	1439.62	1438.79	1434.31	1440.37	1456.09
호 주 달 러	(AUD)	879.31	879.77	877.21	877.73	886.75
싱 가 폴 달 러	(SGD)	990.94	990.95	990.69	990.21	997.3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9.77	299.55	299.29	298.63	300.10

법인카드사용분 회계처리 누락시

Q 2년전 법인카드 사용후 그해 회계처리시 누락되어 지금까지 누락상태로 있습니다.
사용금액은 이미 결재되어 인출된 상태입니다.
누락금액에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소급해서 "비용/미지급비용"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요?

A 전기이전의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품권 결제관련 문의

Q 저희 회사에서 상품권 판매를 하고있는데 상품권은 현재 2종류 입니다.
1) 금액 상품권 (5만원 10만원 30만원)
2) 호텔 이용 상품권 (식음료상품권 / 객실 상품권 / 조식+객실 상품권)
고객이 상품권을 구매할때 상품권구매 전용 단말기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권 구매 전용 단말기가 아닌 일반 단말기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요?

A 상품권 판매에 따라 결제와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데, 상품권 구매 전용단말기가 아닌 일반 단말기에서 상품권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세무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출장비 관련 문의

Q 1. 출장비는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 출장비 정산 시 여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구비 등 다른 회계계정(또는 예산)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2. 이 경우 여비규정에 다른 회계계정(또는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

3. 현재 출장비 실비 정산하고 있어서 법정지출빙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출증빙 없이 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일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출결의서 등에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예를 들면 숙박비가 10만원)에도 법정지출증빙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A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는 실비변상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비용(여비)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을 입수하여 처리하면 되며, 회사의 여비지급에 따라 별도의 증빙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내에서 실비변상적 비과세급여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수 없는 내용이며 귀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서이46013-10649 , 2002.03.27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 출장지 ·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Q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하는 법정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법 46조 8호, 동법 시행령 35조 6항)

이때, 당해 보험이 보장성 보험만 해당하는 것인지,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문의드립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모든 보험금이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상담실 백종훈 차장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마감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시 ·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의무자가 되는데,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모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액이 산출되면 여기에 부가되어 과세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①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내국법인(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외국법인,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①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②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 ③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 ④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 내에 각각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1%~2.5%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법인소득세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800만원+3천억원 초과금액의 2.5%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 산출세액을 사업장별 종업원수비용과 건축물 연면적 등 이익기여도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내의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서 일괄 납부한다.

사업장별 안분 계산 산식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left[\left(\frac{\text{해당 시·군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해당 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right) \div 2\right] \times \frac{\text{관할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할 때,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며, 이때의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 등으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도 포함한다.또한 안분 계산시의 건축물 연면적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으로 하며,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연면적이 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月 연금소득 수령 시 과세방법 및 세율

연금수령액 (공적연금 제외)	2022년	2023년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5% • 70세~79세 4.4% • 80세~ 3.3%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火 주요 국세 · 지방세 신고납부 일정

국세	부가가치세(예정)	4월, 10월
	부가가치세(확정)	1월, 7월
	법인세 신고납부	3월, 6월, 9월, 12월
	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종합부동산세	12월
지방세	지방소득세	5월
	자동차세	6월, 12월
	주민세	7월, 8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매월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일반 양도 시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5년 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20만달러	증여세 과세가액	2억4000만원	양도가액	20만달러
취득가액	10만달러	증여공제	2억4000만원	취득가액	20만달러
양도차익	10만달러 (1억2000만원)	과세표준	0원	양도차익	0원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0%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억1750만원	산출세액	0원	과세표준	0원
세율	22%	-		세율	0%
산출세액	2585만원			산출세액	0원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비교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만 50세 이상 600만원)	700만원 (만 50세 이상 900만원)
중도인출	인출 가능	무주택자 주택 구입, 파산 등 법이 정한 사유만 가능
투자 대상	연금저축펀드 - 펀드(ETF), 리츠	예금,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연금저축보험 - 공시이율형	

직장인영어회화 공부법 2

기본에 먼저 집중하라

직장에서 잡담과 가벼운 대화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업적 책임과 관련된 영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잡담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영어에 집중하세요.

일을 잘 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좋습니다! 이 단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하지만 이해해야 하는) 기술적인 언어나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 경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업무 관련 영어의 공백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거나 영어의 공백으로 인해 책임을 다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기록해 두십시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비즈니스 영어 단어 목록을 공부하고 암기해야 합니까? 미래에 유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영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까?

직업에 필요한 기본 영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거의 항상 영어 실력을 사용해야 하는 커브볼(예기치 않은 상황)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법규법인-2988, 2022.10.10

▌질 의

- 질의법인은 주택건설 분양 판매업 및 관련 용역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4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임
- 질의법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하고자 함
  - 민간임대주택법 §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할 수 있음

질의

- 민간건설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제43조제4항제3호에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 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Marketing Tax consulting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당총액화가산액(grossup)은 공제하지 아니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서면법규재산-3735, 2022.03.29

▌질 의

- 甲은 ㈜◇◇◇◇◇ 지분 99% 및 ㈜★★★★★의 지분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 위 두 법인은 2019년 최대주주인 甲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甲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였음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322, 2022.08.22

▌질 의

- ´2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99의2의 감면주택(B)과 일반주택(A)을 보유하다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 신

’21.1.1. 현재,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한 후 ,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사전법규재산-224, 2022.08.11

▌질 의

- (질의1)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쟁점1거래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제1안) 과세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질의2) 쟁점1이 제2안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이연 금액 범위

(제1안) 전체 양도소득

(제2안)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2022.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2022.08.09.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제1항의 주주가 보유주식의 30% 이상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경우로서 재투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같은 항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며(질의1 관련), 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는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질의2 관련).

"재산세 확 달라진다"...지방세연구원, 과세혁신 방안 연구 착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사업을 통해 4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21만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납세자 세부담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은 '과표실무 현장의견 청취반영'을, 조사사업은 '과세물건의 시장가치 시가표준액 반영'을 각각 사업전략으로 채택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하며,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사업 과제는 ▲공시 기준일(1월 1일)과 과세 시점(각 7월, 9월)간 주택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익성 반영방안 ▲항공기 기준 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준조세 4년새 30% 증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4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81조1천억원)는 조세 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 138조6천억원에 비해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77조1천억원)는 2017년 58조3천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4천억원)보다 많았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전경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 폭이 큰 이유에 대해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준조세 증가와 관련해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관세청,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관세청이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돼 올해 9회째 개최되며,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관세부과에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신청 접수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논문 제출은 9월 30일까지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과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 2023. 4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1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2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개정「조세특례제한법」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단위: %)〉

1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 2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되었는바,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 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1 올해 투자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금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줍니다.

○ 기업은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장 10년간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3 사업용 설비·시설 등에 투자하면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 토지 · 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 차량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특정시설,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등)

구 분	구조 또는 자산 예시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연구·시험용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에너지절약 시설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기자재
환경보전 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종업원용 기숙사·휴게실
안전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건설업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

4 법 개정 전보다 최대 13%p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본공제율은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은 6~7%p 높아집니다.

〈개정「조세특례제한법」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단위: %)

1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2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 2023년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세액공제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❶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며, 5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총 1,500억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약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3) 추가 투자 시				내년('24) 추가 투자 시		
	⇩ (단위: 원)				⇩ (단위: 원)		
	'23	'24	전체(2년간)		'23	'24	전체(2년간)
투자규모	1,500억	1,000억	2,500억		1,000억	1,500억	2,500억
세액공제	140억	30억	170억	>	60억	60억	120억
총투자액 기본공제	90억 (1,500억×6%)	30억 (1,000억×3%)	120억		60억 (1,000×6%)	45억 (1,500억×3%)	105억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50억 (500억×10%)	-	50억		-	15억 (500억×3%)	15억

❷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입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3) 추가 투자 시				내년('24) 추가 투자 시		
	⇩ (단위: 원)				⇩ (단위: 원)		
	'23	'24	전체(2년간)		'23	'24	전체(2년간)
투자규모	200억	100억	300억		100억	200억	300억
세액공제	46억	12억	58억	>	18억	27억	45억
총투자액 기본공제	36억 (200억×18%)	12억 (100억×12%)	48억		18억 (100억×18%)	24억 (200억×12%)	42억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10억 (100억×10%)	-	10억		-	3억 (100억×3%)	3억

❸ 중소기업 B사가 사례❷와 동일한 금액(매년 100억원, 추가 100억원)을 일반 시설에 투자

하는 경우, 2년간 약 4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35억원)와 비교하면약 9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3) 추가 투자 시 ⇩ (단위: 원)				내년('24) 추가 투자 시 ⇩ (단위: 원)		
	'23	'24	전체(2년간)		'23	'24	전체(2년간)
투자규모	200억	100억	300억		100억	200억	300억
세액공제	34억	10억	44억	>	12억	23억	35억
총투자액 기본공제	24억 (200억×12%)	10억 (100억×10%)	34억		12억 (100×12%)	20억 (200억×10%)	32억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10억 (100억×10%)	-	10억		-	3억 (100억×3%)	3억

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습니다.

○ 투자한 시설이 법령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 기술심의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법정 신청서식 제출 (추가자료 제출 가능)

사전조사단 구성 ⇨
-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자격자, 5급 이상 공무원 등 3인 이상 전문가

신청서 평가 ⇨
- (서면검토) 신청서 및 추가자료 검토, 연구개발 사업계획 발표
- (현장실사) 신청내용 및 보완사항의 현장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
- 분기별 1회 개최
- 투자 대상 시설이 법령에 따른 사업화시설인지 여부 심의 및 의결

결과 통보 ⇨
- 신청기업에 심의결과 통보

이의신청(희망시)
- 희망 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심의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 이의신청서 검토 후 결과통보(접수일부터 45일 이내)

6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뒤 국가전략기술시설 등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2월)과 시행규칙('23.3월) 개정

○ 올해부터는 나중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먼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7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투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 과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 외환위기 때도 기업 활력 제고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었고, 닷컴버블로 투자가 위축된 2000년대 초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기본공제율 외에 투자증가분에 10%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시기 및 공제율〉

	'82	'97~'00	'01~'04	'09
도입시기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공제율(%)	6%, 10%(국산)	7~10%	10~15%	3%, 10%(비수도권) * 투자증가분 10% 추가

□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 일시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정작 여건이 좋아졌을 때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여 마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투자·고용·수출 등 우리 경제 모든 분야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

– 국세청, 2023. 4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상대업종)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 :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성명 · 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 ·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 : 거래취소, 2 : 오류발급, 3 : 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 ·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3.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3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수입금액 기준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② 업종 기준 :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 i)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ii)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 iii)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 ① 택시운송사업자
  - ②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 · 시설 · 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 법인사업자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령 제159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79조의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

구 분	업 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1. 노점상업·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아래 업종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의류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 전화가입 방법
- 세미래콜센터 Tel.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5 가입기한

◉ 영위하는 업종,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맹점 가입기한 내 가입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해당연도의 3.31까지
	•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6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 366)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7 발급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8 수취 시 혜택

◉ 소비자 소득공제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공제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 ①현금영수증 ②신용카드 ③직불카드 ④선불카드
- 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40%
  ③ 도서 · 공연비 · 박물관 · 미술관 이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 · 공연비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비 · 박물관 · 미술관 이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 · 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 · 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 · 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사용분) × 40%

◉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 국세청, 2023. 4

□ (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高利, 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❶)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미등록 대부업자 (20명)
*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 / 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 (유형❷)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 (유형❸)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 · 숙박 · 유흥 · 레저 사업자 (25명)
*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 (유형❹)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 (20명)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 · 적법과세 · 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1 세무조사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로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세무조사 부담 완화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	▶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15일 > 20일) ▶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 ▶ 혁신 중소기업 등 정기조사 유예

□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 · 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고액 학원 사업자는 수강료 대폭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음식 · 숙박 · 레저 사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는 전력공급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덕분에 남다른 사업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 이에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 · 숙박 · 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 조사대상자는 ❶ 고리 · 미등록 대부업자, ❷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 ❸ 폭리를 취한 음식 · 숙박 사업자와 유흥 · 레저 사업자, ❹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4가지 유형입니다.

〈 유형별 조사대상자 : 75명 〉

고리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10명	25명	20명

【분야별 세부 유형】

1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①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하는 대부업자
②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2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하는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① 고액 수강료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직업 교육 및 입시 학원
②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3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①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②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4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유형 1] 이자소득 미신고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 20명

□ 첫 번째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미등록 대부업자입니다.

○ (차명계좌)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은 반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신고누락한 대부업자

○ (미등록 대부)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

[유형 2] 고액 수강료 수취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 10명

□ 두 번째 유형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입니다.

○ (특강료와 교재비 신고누락)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누락한 학원 사업자

○ (편법증여)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학원 사업자

[유형 3] 현금매출 신고누락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 25명

□ 세 번째 유형은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입니다.

○ (현금결제 유도)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

[유형 4] 가공경비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 20명

□ 네 번째 유형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입니다.

○ (거짓세금계산서)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한 발전 설비 사업자

○ (가공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 발전 사업자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19년 181명, ’20년 178명, ’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조 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하였고,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 원으로 약 31%를 차지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1,106억 원을 적출하고 142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민생탈세분야 주요 조사대상자인 대부업의 경우, ’19년 72명, ’20년 61명, ’21년 69명 등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득금액 1,757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 향후 업무방향

□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

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 특히,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사례 1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대부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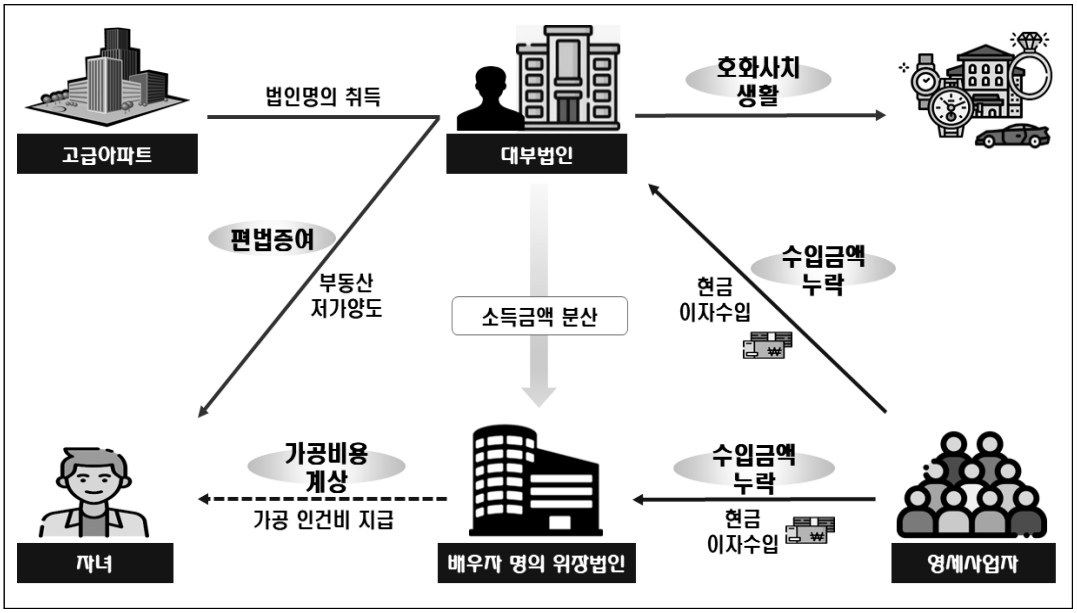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

○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

–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 · 사치생활 영위

□ 조사방향

⇨ 이자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2 수강료를 현금결제 유도하여 신고누락하고 자녀 주주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여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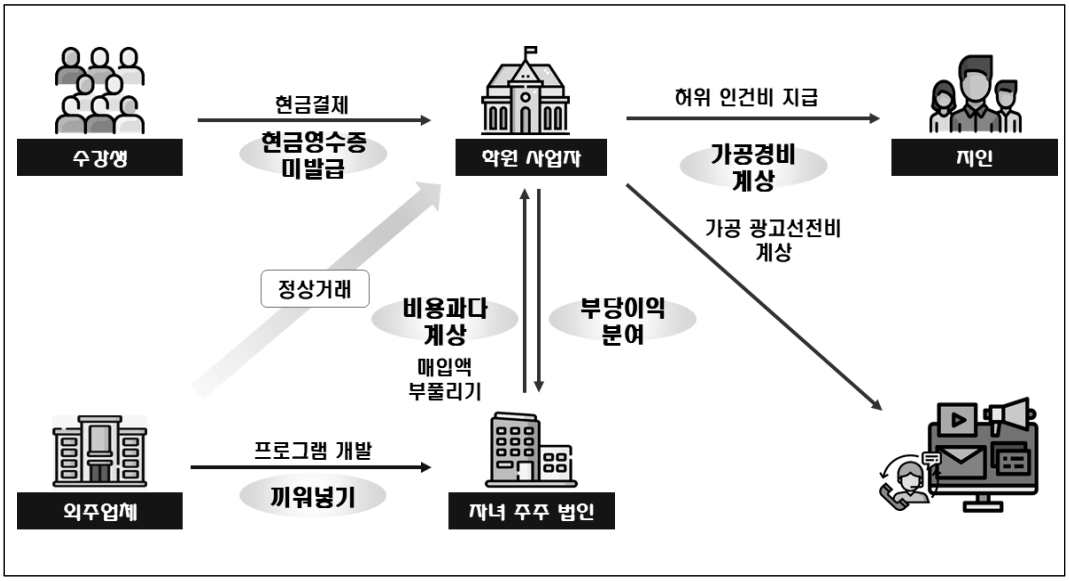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학원을 운영하는 □□□은,

–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현금수입 신고누락

○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 조사방향

⇨ 수강료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3	자녀명의 위장업체를 만들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수입금액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숙박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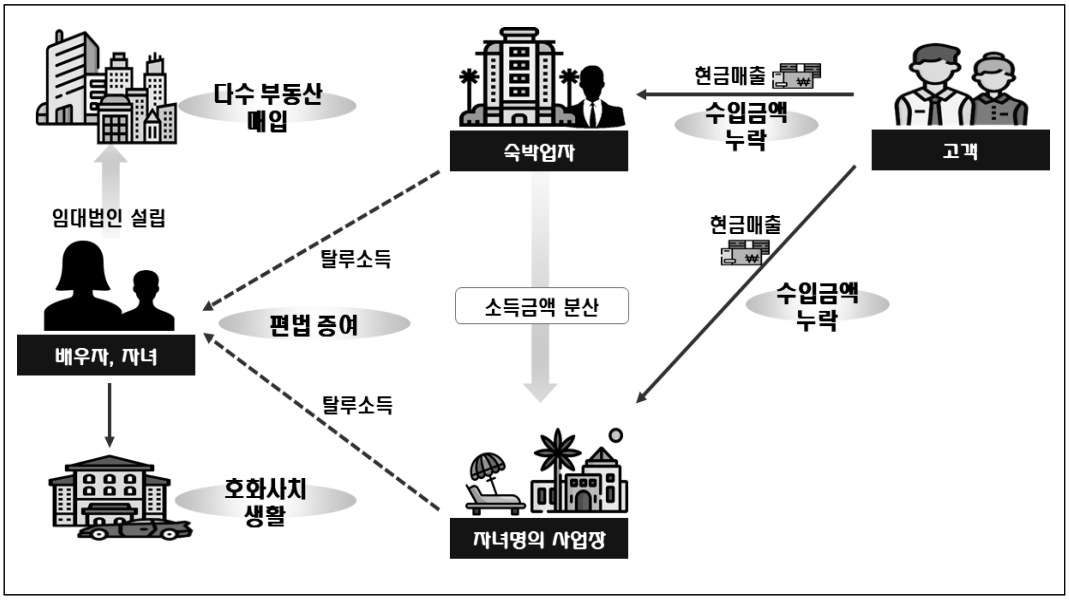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누락
-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

○ 또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업 운영

-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누락, 편법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세금을 탈루한 발전 설비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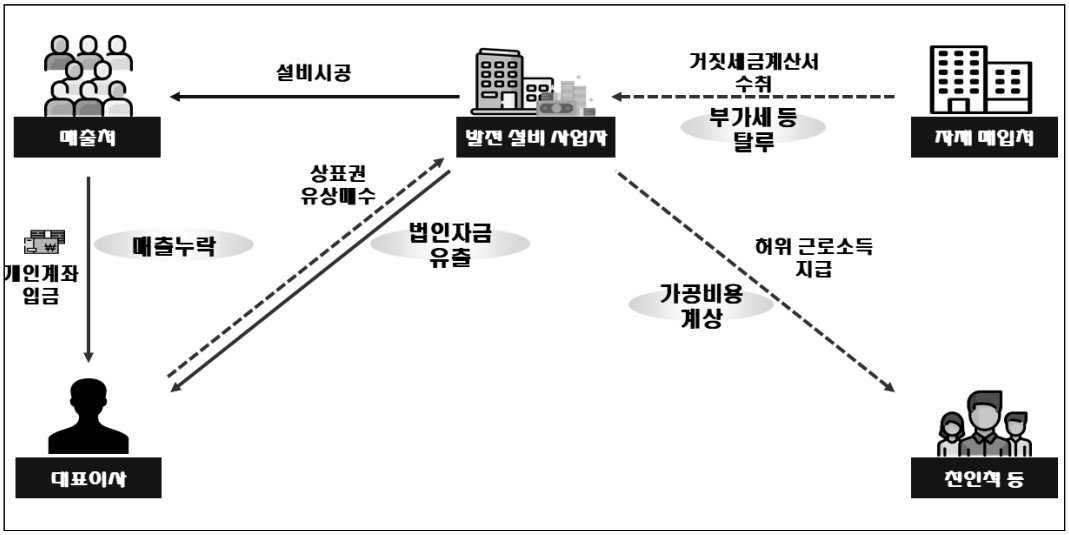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는 발전 설비 사업자로,

–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

○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또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 · 병원 · 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 탈루

□ 조사방향

⇨ 매출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2023년 회계심사 · 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금융감독원, 2023. 4

□ (중점 추진 과제) 경제 불확실성 등 잠재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 · 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

① (회계부정 적발 · 감시 강화) 감리담당부서의 업종별 전문화, 중대사건 우선 · 집중처리 및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등을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② (심사 · 감리 효율 제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의 점검 및 위험요소 분석에 기초한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심사 · 감리의 효율성 제고

③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감사인 감리 대상을 연초에 예고하여 회계법인의 수검부담 완화 및 감사품질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핵심사항을 위주로 테마점검 등을 확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

④ (회계감독 고도화) 감리 · 제재 절차 합리화 및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혁신 등 회계감독기능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

□ (심사 · 감리 대상) 상장사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 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회계감독의 실효성·효율성을 확보함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1 2023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중점 추진 과제

목표

회계정보의 투명성 · 신뢰성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

중점 추진과제

중대한 회계부정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
- 회계리스크 증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업종별 전문화·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 기능 제고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
-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로 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한 회계리스크 요인 적기 포착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효율화하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 감사인감리 방식 효율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새로운 감독제도의 안착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 회계법인의 공시 충실화 등을 통한 감사품질 중시 문화 정착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고도화
-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 지속 추진
- 내부 인프라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감리역량 향상

위험·여건

- 경기침체 등 회계분식 유인증대
- 회계개혁 이행에 따른 기업부담
- 중대 위법행위 적발·감시 강화 필요
- 감사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역할 필요
- 회계·감사 환경변화에 따른 감독체계

가.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

◈ 회계부정행위 적발기능 강화 및 엄정한 감리·제제 등을 통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립

1 회계리스크 증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하고, 횡령 · 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

*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기업 등

2 업종별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 기능 제고

○ 회계위반 가능성 · 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착수 · 처리하고, 심사 · 감리기능 통합* 및 감리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부정 적발 및 감리 기능 강화

* 심사착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일련의 단계로 집중적으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감리각 부서에서 심사·감리·조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여 일괄 처리

3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하여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감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조치

*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최근 3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사, 억원)

〈상장회사〉

과징금*	'20년	'21년	'22년
부과 회사 수	17	14	14
부과 금액	94.6	159.7	223.5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5.6	11.4	16.0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 외감법상 과징금

〈회계법인〉

과징금*	'20년	'21년	'22년
부과 법인 수	2	3	8
부과 금액	2.7	8.4	21.1
법인별 평균 부과 금액	1.4	2.8	2.6

* 외감법상 과징금

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

◈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 점검 및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심사·감리의 효율성 극대화

1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로 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 '23년 테마로 선정된 회계이슈*는 이슈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집중적 · 효율적으로 심사

* ① 수익인식,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③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④ 사업결합

2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한 회계리스크 요인 적기 포착

○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

* 위험요소별 선정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시의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선정건수 및 시기는 감리인력, 심사·감리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 재무제표 심사 · 감리를 효율화하여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 유도

○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토록 유도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전환하여 가급적 1년 내 조사 종결

○ 회계 오류사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정 · 공시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수정 · 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지침 마련 추진

표본심사 대상 선정방법별 위반현황(상장사) (단위: 사, %)

표본 선정방법		'20년	'21년	'22년	3년기준*
위험 요소	위반 회사수	21	17	15	53
	지적률	72.4	43.6	57.7	57.9
테마	위반 회사수	9	11	12	32
	지적률	24.3	23.9	23.5	23.9
무작위	위반 회사수	5	7	8	20
	지적률	38.5	36.8	38.1	37.8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산,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다.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 감사인감리 방식 효율화 및 新제도의 안착을 통해 회계법인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감사품질 수준 개선 도모

1 감사인감리 방식 효율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감사인 감리는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이슈 적기 대응을 위한 테마점검을 강화

○ 감리대상을 연초에 통지하여 회계법인의 수검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감리 주기*는 시장영향력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기본 3년으로 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회계법인이나 품질관리수준 등이 낮은 회계법인 등은 감리인력 범위 내에서 감리주기를 2년으로 단축

2 새로운 감독제도의 안착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 '23.1월 최초 시행된 품질관리수준평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23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 등록요건별(18개)로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지정제외점수(각 20점 ~100점) 부과

3 회계법인의 공시 충실화 등을 통한 감사품질 중시 문화 정착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 수시보고서 신속점검, 작성지침 안내, 공시 · 보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 적정성 확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록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을 평가(계량 및 비계량)하여 회계감독에 활용하고, 인센티브(감사인점수 가산)를 제공하여 품질관리수준 제고 ■ (등록요건 유지의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의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조치 및 감사인지정제외점수 부과 ■ (품질관리제도 개선) 감사인감리 결과 미흡사항을 개선권고하고, 지적사항에 따라 감사인점수를 차감함으로써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고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합리화,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고도화된 회계감독 추구

1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 감리 조사기간(원칙적 1년*) 명문화 및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분석

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하며, 금감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외감법상 과징금 · 과태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치의 수용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추진

2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 지속 추진

○ AI · 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 · 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 · 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T/F」*를 지속 운영

* 디지털 감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방안 등 마련

○ 회계분식 위험도의 정확도 ·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新회계검토모형* 고도화 추진

*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회계분식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

3 내부 인프라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감리역량 향상

○ 심사감리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아카데미교육을 내실화*하고, 실무지침을 구체화하여 심사 · 감리매뉴얼 개정 추진

*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활용기법, 협의사항 발견기법, 문답요령 등 실무중심으로 편성

회계감리절차 개선 방안 ('22.6.2. 보도)
■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등

2 심사 · 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감리 내실화 및 기획 · 테마 감리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등 감리범위 확대,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6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 · 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처리건수 보다는 중요사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 · 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사 내외로 선정

*1 ①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②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사 내외로 선정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리

□ 총 14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5사, 다군 7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22.8월말 기준 상장회사 등록감사인은 가군·나군·다군에 해당

○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10사를 우선 선정 후 시장규모와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4사를 추가 선정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 예정

〈감사인감리 군별 구분〉

구 분	해당 군별 회계법인 수	'23년 계획	실적			
			'20	'21	'22	계
가군	4	2	2	2	2	6
나군	14	5	3	4	3	10
다군	23	7	3	5	6	14
라군	-*	-	1	2	6	9
합 계	41	14	9	13	17	39

* '22.8월말 기준으로 등록감사인의 지정군은 가군·나군·다군으로 구성

□ 회계법인 소속 군(群) 등을 감안하여 3~4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①등록요건 유지의무, ②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③감사투입시간 관련 시스템 구축 · 관리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 (연 혁) '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2.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2회 공동검사 실시

3 기대 효과

□ 회계리스크 증가기업 등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부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엄정조치함으로써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의 적시점검 및 회계위험요인 조기포착 등 사전점검 기능도 강화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

□ 재무제표 심사제도 안착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공시 ·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감리 · 제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회사 및 감사인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제재 수용성 제고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新 감독제도 안착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 사후적으로 감사인 감리시 핵심사항을 위주로 이슈별 테마점검 등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감사품질 개선에 기여

⇨ 실효적인 회계감독 및 사전 예방적 감독강화를 통해 신외감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 확보에 기여